

유학생의 특별관리

# 업무 규정

(2010년 개정 - 개정 1 및 2 포함)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MANA TOHU MĀTAURANGA O AOTEAROA

## 서문

본 규정은 유학생에 대한 특별관리의 기본 체제를 교육기관에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89년 교육법 제238F항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교육법의 요구에 따라 유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기관이어야만 한다.

본 규정은 2002년 3월 31일 시행되었으며 2003년 7월 처음 개정된 이후 2010년 다시 개정되었다.

### 용어정의

본 규정에서 문맥상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감독자

임시 숙박시설에 있는 단체학생들 및 유학생들을 관리, 감독하는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 교육기관

- (가) 학교
- (나) 교육법 제159항에 정의된 시설 및 기관
- (다) 사설교육 및 훈련시설

#### 국제교육 향소청 (IEAA)

본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제교육 향소청을 의미한다. (유학생에 한함)

#### 규정

유학생의 특별관리 관련 업무 규정을 의미한다.

#### 기숙사 시설

- (가) 숙박시설로 허가된 호텔이나 그 외 기숙사형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호텔들
- (나) 5명 이상의 유학생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 기숙사 시설 직원

기숙사 시설에서 일을 하도록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 단체학생

10 살 이상의 유학생 2명 이상이 단체로 뉴질랜드에 입국해서 유학생 특별관리 업무규정에 의해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을 의미한다.

#### 등록 기관

본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기관으로 신청을 하고 본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관을 의미한다.

#### 만 나이

학생의 여권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한국나이에서 1살을 뺀 만 나이로, 생일이 안 지났으면 2살을 뺀 만 나이를 의미한다.

#### 법

1989년 교육법을 의미한다.

#### 법적 후견인 (가디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교육과 건강관리 모두 포함)을 의무로 하는 법적 권리 및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뉴질랜드 국내외 법원이나 유언장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고 해당 학생의 모국에서도 학생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부모

유학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그리고 법적 후견인도 포함해서 의미한다.

#### 사설교육 및 훈련시설

교육법 제159항에 정의된 공인시설을 의미한다.

#### 숙박시설 보호자

- (가) 하숙집 주인
- (나) 기숙사의 매니저 또는 유학생의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
- (다) 지명된 보호자
- (라) 임시 숙박시설에 있는 경우, 담당 감독자를 의미한다.

**숙박시설 알선업체**

유학생을 위한 등록 기관이나 그 기관의 직원들 이외에 등록 기관을 대신하여 유학생들(개인 혹은 단체)에게 숙박시설을 구해주는 업무를 담당 및 관리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숙박시설로 허가된 호스텔**

교육법 제2항에 정의되었고 2005년 교육법규(호스텔관련)에 의하여 허가된 호스텔을 의미한다.

**어린 유학생**

- (가) 학교의 경우,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입학한 유학생
- (나) 그 외 교육기관의 경우, 입학연령 13살 이하의 유학생을 의미한다.

**(교육)업계**

교육기관의 시스템을 해외로 전파시킴으로 야기되는 이해관계 및 이점들을 정부와 정부 산하 기관들에게 이해시키는데 책임이 있는 기관(기관에 소속된 대행업체들도 포함)을 의미한다.

**유학생**

기관에 등록되어있고 교육법률 제2항 또는 제159항에 의거하여 외국인 학생으로 정의된 학생(두 조항 중 한 조항이상 해당자)을 의미한다.

**유학생모집 대행업체**

뉴질랜드 국내외에 잠재되어있는 유학생들(개인 또는 단체)의 신원을 확인하고 모집하는 업무를 하는 조직체를 의미한다. 단 등록 기관이나 그 직원들은 제외된다.

**임시 숙박시설**

모텔, 호텔, 호스텔, 별장 또는 그 외 여행객 숙박시설을 의미한다.

**장관**

어떠한 명령도 내릴 권한 또는 수상의 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현재 1989년 교육법 제18A조 시행에 임시 책임을 맡고 있는 왕실장관(정부장관)을 의미한다.

**재검토위원회**

본 규정에 의거한 국제교육재검토위원회를 의미한다.

**지명된 보호자**

유학생의 부모로부터 자기 아이의 보호자 및 숙박시설의 제공자로 (서면으로) 지명된 친척이나 가족과 가까운 친구를 의미한다. 기숙사 시설의 주인, 매니저 그리고 직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숙집 (홈스테이)**

4명 미만의 유학생들이 숙박할 수 있는 가정을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의미한다.

**하숙집 주인**

유학생들에게 숙박시설인 하숙집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학교**

교육법 제2항에 정의된 공식등록 학교를 의미한다.

**학교호스텔**

기숙사 학교가 소유하거나 관리, 운영하며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시설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허가된 호스텔을 의미한다.

(대상학생: 학교의 경우 1학년에서 6학년, 그 외 교육기관인 경우 입학연령이 10살 이하의 유학생)

**행정기관**

본 규정의 시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정된 기관으로서 NZQA를 의미한다.

**CYF**

아동, 청소년 및 가족 관련 업무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 개발부 산하 부서를 의미한다.

## 1 일반 사항

### 1 기본 정보

- 1.1 등록 기관들은 반드시 본 규정의 실체와 내용을 유학생 관련업무를 보는 모든 직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나마 관심과 주의를 갖도록 하여야만 한다.
- 1.2 등록 기관들은 직원들이 본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돕고자 유학생 담당 역할에 적합한 지원과 훈련이 직원들에게 제공되는지 반드시 확실히 확인해야만 한다.

### 2 국외 학생들

- 2.1 등록 기관들은 뉴질랜드 외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유학생들에 한해서는 본 규정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 3 단체 학생들

- 3.1 등록 기관들은 다음 사항들이 단체 학생들에게 지켜지는지를 확실히 해야만 한다.
- 3.2 등록 기관들은 단체 학생들이 다음 사항들에 해당됨을 반드시 확실히 해야만 한다.
  - 3.2.1 적절한 관리 및 감독
  - 3.2.2 한 감독자당 적합한 학생 수
- 3.3 본 규정의 27.3항과 27.4항에 따라, 어린 단체 유학생들을 조직하고 입학시키는 등록 기관인 경우, 해당 학생들을 입학 시키지 전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 3.4 단체 학생들을 조직하고 입학시키는 등록 기관들은 교육기관과 본 방문에 개입된 제3자의 책임사항들을 명백히 나타내주는 방침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단 본 항목들에 제한 되지는 않음)
  - 3.4.1 학습지도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3.4.2 연락 담당자 및 24시간 비상 연락처 (전화번호)
  - 3.4.3 부모 허가 여부 (18세 미만 학생에 해당됨)
  - 3.4.4 부모 해외 연락처
  - 3.4.5 숙박시설 마련 계획
  - 3.4.6 학비/경비
  - 3.4.7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가능성 예측 및 대응 조치 계획
  - 3.4.8 의료보험과 여행보험 요구
  - 3.4.9 18세 미만 학생들을 위한 24시간 관리, 감독상의 책임 및 규정 분배

## 2 유학생 대상 마케팅, 모집 및 입학

### 4 예비 유학생 대상 정보 규정

- 4.1 본 항에서 제공된 모든 정보들은 반드시 서면 또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있어야 하며, 국제교육 항소청이나 행정기관에게 제시하거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사용될 수 있게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또한 모든 경비 지불 및 지급된 기록도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4.2 등록 기관들이나 대행업체들은 예비 유학생들을 위하여 학생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면 또는 특정 웹 사이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 4.2.1 학비 및 수업료, 그 외 수업 관련 경비들 (다른 명목으로 사용될 비용이 없어야 함.)
  - 4.2.2 입학 자격 및 신청 절차
  - 4.2.3 입학 허가 조건
  - 4.2.4 환불 조건
  - 4.2.5 영어능력 점수 요구 (해당 시에만)
  - 4.2.6 건물 및 시설과 직원들 정보
  - 4.2.7 해당 등록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자격증 정보
  - 4.2.8 의료보험과 여행보험에 관련된 가입조건 정보
  - 4.2.9 학생들에게 적합한 숙박시설 종류에 대한 정보 및 조언

- 4.3 숙박시설의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4.3.1 숙박시설 여부 외에 종류별 특성들
  - 4.3.2 캠퍼스 안과 밖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현실적인 예상 비용
  - 4.3.3 숙박시설 확보를 위한 신청 과정
  - 4.3.4 숙박시설이 학생들에게 적합한지의 여부를 해당 등록 기관이 검토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5 안내서 및 홍보물**

- 5.1 안내서 또는 홍보물에는 반드시 해당 등록 기관이 제공하겠다고 하는 활동사항 및 서비스들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만 한다.
- 5.2 안내서 또는 홍보물은 위 4항에서 언급된 예비 유학생 대상 정보들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만 한다.
- 5.3 등록 기관들은 안내서 또는 홍보물에 다음과 같은 표준 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한다.

**규정**

[기관 명을 적으세요]은(는) ‘유학생의 특별관리 업무 규정’을 준수하는데 동의한바 본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본 규정의 사본들은 뉴질랜드 NZQA 웹사이트 [www.nzqa.govt.nz](http://www.nzqa.govt.nz)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

이민에 관련된 필요한 조건들과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기간 중 취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의 대한 조언, 그리고 이민성 보고 시 요구사항의 관한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들으실 수 있는데 이민성 웹 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http://www.immigration.govt.nz)에서 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혜택 자격여부**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 공금으로 운영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문 중에 의료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대부분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해야 할 것입니다. 공금으로 운영되는 의료 서비스 혜택 자격여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부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 해당 기관 웹사이트 [www.moh.govt.nz](http://www.moh.govt.nz)에서 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 보험**

사고보상처리공사(ACC)는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 자 및 영주권 자 그리고 뉴질랜드에 잠시 방문한 여행객 모두를 대상으로 사고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들은 이 경우 치료비와 그 외 드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 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ACC 웹 사이트 [www.acc.co.nz](http://www.acc.co.nz)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 및 여행 보험**

유학생(단체 유학생들도 포함)들은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 자신들에게 알맞은 유효한 의료 및 여행 보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6 예비 유학생의 자격 검토 및 평가**

- 6.1 영어 능력(말하기와 쓰기 부분) 점수가 입학 전에 요구되거나, 학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취급되는 경우, 등록 기관에서는 유학생들에게 입학 기회 및 허가를 주기 전에 해당 학생의 자격을 반드시 평가 하며 능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해당 학생에게 입학 기회 및 허가를 주게 된다.
- 6.2 만약 교육과정 또는 교육과정의 특정 단계에서 일정수준의 영어능력을 요구하거나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공부하여 시험을 통과한 기록이 있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입학을 실시한다면 등록 기관에서는 예비 유학생들에게 입학 신청 전에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반드시 조언을 해주어야만 한다.
- 6.3 만약 예비 유학생들이 제6.1항에 명시된 필수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기관 측에서 만족스럽지 않다면, 해당 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영어과정 수강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영어 과정은 해당 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내주기 전이나 학생이 신청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중이라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다.

**7 유학생 입학 허가**

- 7.1 등록 기관이 유학생에게 교육과정 수강을 허가하는 경우, 이는 반드시 예비 유학생의 영어능력 수준과 해당 학생이 마음에 두고 있는 미래의 직업, 그리고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가 전반적으로 잘 맞는지에 대한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해야만 한다. 이 평가자료의 결과는 뉴질랜드 이민성에 보관하여 신청할 경우 받아들 수 있게 반드시 서류로 작성되어야만 한다.

- 7.2 유학생을 입학시킬 때, 등록 기관은 반드시 아래 모든 정보들을 해당 유학생에게 알려주거나 이미 알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 7.2.1 등록기관의 신입생 환영 프로그램 및 지원 서비스에 관한 세부사항
  - 7.2.2 등록 기관의 불만 처리절차
  - 7.2.3 본 규정 또는 규정 관련 중요 정보 안내 책자  
(뉴질랜드 NZQA 웹사이트 [www.nzqa.govt.nz](http://www.nzqa.govt.nz)에서 받아볼 수 있음)
  - 7.2.4 각 교육기관들의 방침에 따라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에는 정해진 출석기간이 있는데 학생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거나 본 기관을 그만 둘 경우 적용되는 처리절차
  - 7.2.5 등록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이 종결될 수 있는 상황
  - 7.2.6 등록기관의 학비보호 및 환불 방침 관련 세부사항
  - 7.2.7 등록기관이 인정하고 학생에게도 적합한 (15항에 명시 됨) 숙박시설 종류의 세부사항
  - 7.2.8 학생의 출석 시작 날짜와 교육과정 시작 날짜 관련 세부사항
- 7.3 다음 사항들이 해당 등록기관에 적용되는 사항이라면 유학생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만 한다.
  - 7.3.1 유학생들이 입학 가능한 교육과정들
  - 7.3.2 브릿지 과정 (학습능력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정규과목들과 같이 공부하는 과정) 그리고 과정 시작 전 혹은 과정 중에 제공되는 영어 프로그램
  - 7.3.3 이전에 이수한 교육과정 인증 절차 시스템
  - 7.3.4 계좌이체 절차의 세부사항
- 7.4 등록기관에서는 유학생을 입학시킬 때 해당 유학생이 적합한 의료 및 여행 보험을 가지고 있고, 계획된 수업기간 동안에 유효한 보험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 7.5 등록기관에서는 유학생 입학 시 아래 모든 정보들을 문서로 기록, 보관해야만 하고 이를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 7.5.1 이름
  - 7.5.2 현 주소 및 숙박시설 종류 그리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7.5.3 여권 및 비자/허가증 세부사항 (여권의 사진이 있는 맨 앞 면과 현 비자/허가증이 나온 면을 복사, 스캔 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
  - 7.5.4 18세 미만의 학생인 경우, 부모의 이름 및 현 주소. 그리고 18세 이상인 경우,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근친자의 이름 및 현 주소
  - 7.5.5 의료 및 여행 보험 세부사항
- 7.6 등록기관은 유학생들에게 아래 사항 중 만약 하나라도 변경 사항이 생기면 본 기관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입학 시 알려주어야만 한다.
  - 7.6.1 연락처
  - 7.6.2 숙박 시설 종류
  - 7.6.3 거주지 주소
  - 7.6.4 비자 상태
- 8 해외에서 등록기관을 대표하는 직원들**
- 8.1 해외에서 마케팅 및 학생모집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반드시
  - 8.1.1 등록기관의 입학절차 및 학습 평가 시스템 그리고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학위 및 자격증들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8.1.2 학생모집이 이루어지는 해당 국가의 문화 및 관습에 민감해야만 한다.
  - 8.1.3 학생이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에 대하여 해당 직원이 인지하였을 경우, 그 등록기관이 제안하는 과정과 학위 및 자격증들이 나중에 학생 자신의 국가에서 취업을 하거나, 다른 과정에 진학을 할 때 중요한 문제가 되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예비 유학생에게 조언을 해주어야만 한다.
- 8.2 등록기관의 직원이 예비 유학생들로부터 입학에 관련된 문의사항들을 받았는데 그 것이 자신이 아는 분야 범위 외의 사항들이라면 상기 8.1.1-8.1.2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사항에 지식이나 해결 능력이 있는 직원에게 학생을 반드시 보내주어야만 한다.
- 9 비자 취득관련 요구조건**
- 9.1 등록기관은 예비 유학생들에게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려면 뉴질랜드 이민성의 요구조건에 충족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반드시 통지해 주어야만 한다.

- 9.2 예비 유학생이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공부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로 하는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두 사항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따라 주어야만 한다.
  - 9.2.1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조언을 얻는다.
  - 9.2.2 유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곳에서 자문 받기를 조언해준다.
    - (1) 뉴질랜드 이민성
    - (2) 2007년 이민 상담자 자격기본법에 따라 허가된 이민 자문업체들
    - (3) 2007년 이민 상담자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지 않지만 이민 상담이 허가된 상담자
 예비 유학생들이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공부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교육과정이나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이민 상담자 및 자문업체들의 명부는 이민상담자협회 웹사이트 [www.iaa.govt.nz](http://www.iaa.govt.nz)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9.3 학생의 등록기간 종료 및 등록해제가 되었을 때 등록기관에서는 반드시 온라인상 통지 및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뉴질랜드 이민성에 즉시 보고해야만 한다.

### 3 계약된 대행업체

- 10 학생모집 대행업체 및 숙박시설 알선업체
  - 10.1 등록기관에서는 자신들의 기관을 대신하는 대행업체들에게 본 규정을 꼭 따라줘야만 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시켜 주어야만 한다.
  - 10.2 등록기관에서는 해당업체의 모국어로 된 본 규정 책자를 소지하거나 구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당업체에게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
  - 10.3 등록기관은 대행업체와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해당 대행업체가 본 규정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겠다고 동의한 점과 대행업체가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10.4 등록기관은 도덕적, 윤리적 행동이 최대로 중요함을 인정한다.
  - 10.5 만약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대행업체에 해당이 된다면, 본 기관에서는 해당 대행업체에게 그와 같은 사항 및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할 것이다.
    - 10.5.1 의도적이던 아니던 오해하게 만들거나 속이는 행위를 한 경우
    - 10.5.2 본 규정에 따른 등록기관의 책무를 어긴 경우
  - 10.6 만약 대행업체에서 해당 사항 및 행동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등록기관에서는 즉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모두 실시한다.
    - 10.6.1 대행업체 인가 해제 및 인가증 취소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 10.6.2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반드시 해약시켜야만 한다.
    - 10.6.3 해당 대행업체를 통해 학생들을 받는 것을 반드시 중지해야만 한다.
  - 10.7 등록기관들은 대행업체들에게 등록기관과 대행업체와 학생 거주지의 보호자간의 책임 분배에 대한 조언을 반드시 해주어야만 한다.

### 4 계약 및 손해배상

- 11 등록기관의 계약상 및 재정상의 책무
  - 11.1 등록기관은 유학생을 다루는데 있어서 관련된 교육법의 모든 조항들을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 11.2 유학생들의 입학과 관련된 등록기관(또는 등록기관의 대행업체)과 유학생간의 모든 계약과 재정상의 거래는 반드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만 한다.
  - 11.3 등록기관(또는 학생모집 대행업체)과 유학생간의 모든 계약과 재정상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유학생이나 유학생의 부모는 자신들이 개입된 모든 계약의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 11.3.1 등록기관과 유학생(또는 유학생 부모)간의 모든 계약서에는 학생 입학 조건과 등록기관의 환불 방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

11.3.2 등록기관과 18세 미만의 유학생간의 모든 계약서에는 유학생 부모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

11.4 등록기관에서는 유학생들이 내는 모든 학비를 보호하는 학비보호 방침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 12 손해배상

12.1 각 등록기관들은 본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의해 발생한 경비, 손실, 손상에 대한 비용들과 다음과 같은 사안으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해당 등록기관이 (전액 손해배상 기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12.1.1 본 규정의 조항을 등록기관이나 대행업체들이 위반한 경우

12.1.2 등록기관(또는 등록기관의 대행업체)의 태도 또는 본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책무 이행 관련 문제인 경우

12.1.3 의도적이던 아니던 잘못되거나, 오해하게 만들거나, 속이는 행위를 한 경우

12.2 12.1항과 같은 요구사항들을 심사 숙고할 때에는 공명정대한 원칙들이 적용될 것이다.

## 5 복지

### 13 지원 서비스

13.1 등록기관은 유학생들의 모든 특별관리 문의사항을 담당할 책임자로 적합한 사람을 지명해야만 한다. 그리고 지명된 책임자와 어떻게 연락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학생이 입학할 때 알려주어야만 한다.

13.2 등록기관은 유학생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한다. (단 본 항목들에 제한이 되지는 않음)

13.2.1 교육기관의 종류와 학생에 맞는 신입생 환영 프로그램

13.2.2 새로운 문화 환경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들을 도움

13.2.3 본 규정에 따른 학생 본인들의 권리와 등록기관의 책무가 무엇이고 대내외적 불만들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학생들이 확실히 알아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

13.3 등록기관들은 상기 13.1항과 13.2항의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해당사항에 대하여 유학생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 줘야만 한다.

13.3.1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조언

(등록기관이 모든 숙박시설의 적합성을 검토, 평가하고 나온 결과에 대한 조언 포함)

13.3.2 뉴질랜드의 운전관련 법, 운전면허 요구사항 및 도로교통 안전수칙(보행자 및 자전거 안전 수칙 포함)에 관한 정보제공 및 조언

13.3.3 교육과정에 관한 조언

13.3.4 복지시설 (개인 의료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 약물(마약) 교육 및 상담 서비스 포함)

13.3.5 건강홍보 및 성교육과 생식기관 의료서비스관련 정보들을 어떻게 접하는 가에 대한 조언

13.3.6 술, 담배제품 판매 관련법과 같이 유학생들에게 관계된 뉴질랜드 법들에 관한 정보제공 및 조언

13.3.7 괴롭힘, 학대 및 차별이라는 용어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에 관한 정보제공 및 조언

13.4 유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

### 부모와의 의사소통 (18세 미만 유학생)

13.5 등록기관은 18세 미만의 예비 유학생을 입학시키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해당 학생의 부모와 연락을 해야 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학생들의 부모와 연락망도 꼭 구축해야만 한다.

13.6 등록기관은 반드시 18세 미만 유학생들의 부모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야만 한다.



**어린 유학생들**

- 13.7 등록기관은 특별하고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어린 유학생들에게 그들의 필요사항들이 제대로 충족되는지를 점검, 조치하는 방안들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그 중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단 본 항목들에 제한이 되지는 않음)
  - 13.7.1 본 규정의 15.5항, 27.3항, 27.4항에서 인가된 어린 유학생들인 경우, 또는 현재 부모하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부모와 같이 살 학생인 경우, 본 규정 제6조에서 요구하는 숙박시설에 거주
  - 13.7.2 학생이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 학생과 부모간의 정기적인 연락망을 구축해주는 규정
  - 13.7.3 모국어 지원 서비스 기회
  - 13.7.4 가급적이면 모국어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
  - 13.7.5 정기적으로 유학생들을 접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문화비교 훈련

**추가 관리 및 특별지도가 필요하거나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규명된 학생들**

- 13.8 등록기관들이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학생들 중 어느 누구든 어떤 식으로든 심각한 위해나 착취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거나 자신의 행복, 건강, 이익을 충분히 지킬 수 없다고 믿는 경우, 반드시 이를 기록해야만 하고 다음과 같은 방침들이 뒤따른 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 13.8.1 등록기관들은 해당 학생들과 반드시 정기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만 한다.
  - 13.8.2 등록기관에서는 반드시 해당 학생의 부모나 근친자 중 누구와 연락하는 것이 적합한지 결정하여 그 사람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대화를 나눌 경우, 1993년 사생활 보호법을 따라야만 한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확인시켜야만 한다.
  - 13.8.3 등록기관에서는 만약 해당 학생의 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점이 있다면 다른 기관들에게 반드시 협조 요청을 해야만 한다.
  - 13.8.4 해당 학생이 안정된 생활을 지내고 있지 않은 경우, 등록기관에서는 반드시 학생의 생활 환경을 판단 및 결정하여 지원을 제공해주거나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줘야 한다.
- 13.9 만약 유학생이 방치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사, 위해 또는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등록기관에서는 이를 CYF(CYF보고서규약에 따라)나 뉴질랜드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만 한다.

**14 확실한 학생복지를 위한 역할 참여**

- 14.1 등록기관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치방안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 14.1.1 유학생들이 교육과정의 요구조건들을 성실히 지키고 있는지를 확실히 점검한다.
  - 14.1.2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조치를 취한다.
- 14.2 만약 유학생이 입학한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은 교육법 77A항에 속한 학생출석기록부 관련 규칙들을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 14.3 유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교에서 정학, 퇴학 또는 제적을 당한 경우, 등록기관은 다음 교육법을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 14.3.1 공립 및 공립통합학교인 경우, 교육법 18항 그리고 18AA항에 속한 모든 규칙
  - 14.3.2 사립학교인 경우, 교육법 35AA항

**6 숙박시설**

**15 숙박시설 규정**

- 15.1 등록기관은 유학생들이 거주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도움을 요구할 경우, 그 일을 책임질 책임자로 반드시 적합한 사람(또는 사람들)을 지명해야만 한다. 그리고 지명된 책임자와 어떻게 연락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학생이 입학을 할 때 알려주어야만 한다.
- 15.2 숙박시설 규정에 대하여 염려하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면 행정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만 한다.
- 15.3 등록기관이 18세 이상인 유학생들에게 숙박시설을 안내해 줄 경우, 아래 기재된 숙소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15.3.1 하숙집
  - 15.3.2 기숙사 시설
  - 15.3.3 임시 숙박시설



- 15.4 등록기관들은 모든 18세 미만 유학생들이 다음 5가지 종류의 숙박시설 중 어느 곳에서 지내는지와, 본 규정 6항에서 적용되는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반드시 기록해야만 한다.
- 15.4.1 하숙  
15.4.2 기숙사 시설  
15.4.3 지명된 보호자  
15.4.4 임시 숙박시설 (단, 해당 유학생의 교육과정이 3개월보다 더 짧을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됨)  
15.4.5 부모와 같이 지냄
- 15.5 등록기관들은 어린 유학생들이 현재 부모와 살고 있고 앞으로도 부모와 함께 살 것인가를 판단하여 반드시 기록해야만 한다. 단 아래항목들 중 하나와 같이 본 규정의 27.3항과 27.4항에 의거하여 등록기관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15.5.1 단체 학생 입학 시 (해당 학생이 단체 학생들의 일원인 경우)  
15.5.2 유학생이 학교에는 7~8학년으로, 다른 교육기관에는 11~13살일 때 입학 시  
15.5.3 학교 호스텔에서 숙박하는 어린 유학생들
- 상기 15.5.1항과 15.5.2항의 경우, 어린 유학생들이 하숙이나 허가된 호스텔 또는 지명된 보호자와 같이 숙박을 하는 경우에만 행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될 것이다.
- 15.6 등록기관이 어린 유학생들에게 상기 15.5항에서와 같이 승인된 숙박시설을 안내해 줄 경우, 16.3항, 17.3항 그리고 18.1.3항에 따라 3개월 마다 인터뷰를 실시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 15.6.1 인터뷰한 내용들은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신청할 경우 받아볼 수 있게 반드시 서류로 작성해야만 한다.  
15.6.2 행정기관의 요구 시, 등록기관에서 학생에게 안내해준 숙소시설의 주소 및 그 곳에서 지내는 학생들의 명수를 알려줘야만 한다.
- 15.7 등록기관에서는 입학시킨 어린 단체 유학생들 또는 허가된 호스텔에 들어간 어린 유학생들인 경우, 주말과 학교 방학 때를 위한 특별관리계획 및 대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특별 관리 계획에는 다음 사항들이 모두 포함된다 (단 본 항목들에 제한이 되지는 않음)
- 15.7.1 적합한 숙박시설  
15.7.2 학생과 부모간의 정기적인 연락망을 구축해주는 규정  
15.7.3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상기 계획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조치방안
- 16 하숙**
- 16.1 등록기관들은 숙박시설 알선업체보다 하숙집 관리인과 거주지 선별 및 관찰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한 확고한 처리절차를 반드시 갖춘다. (단, 제한되지는 않음)
- 16.1.1 하숙집은 기숙사 시설이 아님을 판단  
16.1.2 하숙집 관리인으로서의 적합한지의 평가 및 판단  
16.1.3 거주 시설로서 적합한지의 현장검증  
16.1.4 하숙집 관리인으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
- 16.2 등록기관 또는 숙박시설 알선자(또는 알선업체) 측에서는 하숙집 관리인들을 위한 내부지원체계를 반드시 정립해야만 한다. 그리고 유학생들에게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체능력을 키울 수 있게 최상의 실습에 대한 정보와 조언들을 제공한다.
- 16.3 등록기관들은 18세 미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적어도 3개월마다 만나서 지내고 있는 하숙시설이 적합한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 16.4 등록기관 또는 숙박시설 알선자(또는 알선업체)는 18세 미만의 학생들이 머무는 하숙집인 경우 각각의 하숙집들을 일년에 적어도 2번은 반드시 방문을 해서 지내고 있는 숙박시설이 적합한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만약 해당 숙박시설이 학생들에게 일부 적합하지 않다고 의심이 되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반드시 재차 방문을 해야만 한다.
- 17 기숙사 시설**
- 17.1 기숙사 시설을 운영하는 등록기관(또는 기숙사 시설을 유학생에게 알아봐 주는 등록기관)은 숙박시설 알선업체보다 기숙사 시설 승인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한 확고한 처리절차를 반드시 갖춘다. (단, 제한되지는 않음)
- 17.1.1 지방정부의 법들을 준수하는지 확인  
17.1.2 18세 미만인 유학생들에 기숙사 시설을 관리해주는 매니저 또는 담당자 그리고 18세 이상인 학생들을 담당하는 거주지의 매니저 신원 확인  
17.1.3 기숙사 시설의 경영능력 및 직원들의 적합성 여부 평가  
17.1.4 거주 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현장검증

- 17.1.5 기숙사 시설 측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평가
- 17.1.6 유학생들의 안전상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관찰 및 관리
- 17.2 기숙사 시설을 운영하는 등록기관(또는 유학생들에게 기숙사 시설을 구해주는 등록기관)은 기숙사 시설 내에서의 폭력과 학대 등의 발생 가능성을 반드시 관찰 및 관리해야만 한다.
- 17.3 등록기관들은 18세 미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적어도 3개월마다 만나서 지내고 있는 기숙사시설이 적합한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 17.4 등록기관 또는 숙박시설 알선자(또는 알선업체)는 18세 미만의 학생들이 머무는 기숙사 시설인 경우, 각각의 기숙사 시설들을 일년에 적어도 2번은 반드시 방문을 해서 지내고 있는 숙박시설이 적합한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만약 해당 숙박시설이 학생들에게 일부 적합하지 않다고 의심이 되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반드시 재차 방문을 해야만 한다.
- 17.5 본 조항에 따라 학생들은 27.3항과 27.4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허가된 호스텔에만 보내질 것이다.

## 18 지명된 보호자

- 18.1 18세 미만의 유학생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할 사람으로 친척 또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를 지명한 경우, 등록기관은 반드시.
  - 18.1.1 등록기관이 입중한 숙박시설을 전제로 해당 학생의 부모와 부모가 지명한 보호자인 친척 (또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이 아이를 위해서 숙박시설을 선별하여 정했다는 내용에 부모가 친필서명 한 보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 18.1.2 다음 사항들을 모두 실행하기 위하여 학생이 숙박시설을 입학 시 또는 (사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입학 전에 방문을 해야 한다.
    - (가) 생활 조건들이 만족스러운 기준들인지를 평가, 판단
    - (나) 하숙집 관리인이 학생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지에 대한 여부 평가
    - (다) 해당 숙박시설이 기숙사 시설이 아님을 판단
    - (라) 지명된 보호자를 만나 서로 연락망을 구축
  - 18.1.3 학생 개개인을 적어도 3개월마다 만나서 지내고 있는 숙박시설이 적합한지를 확실히 한다.
- 18.2 만약 숙소시설이 학생부모의 선별 하에 정해졌다면, 등록기관에서는 상기 17항에서 지정된 기숙사 시설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 19 임시 숙박시설

- 19.1 등록기관들은 임시 숙박시설과 그에 동반되는 관리감독들이 적합한지를 판단할 확고한 처리절차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모두 포함은 하되 단 제한하지는 않는다.
  - 19.1.1 숙박시설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 19.1.2 18세 미만인 학생들이 적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보장
  - 19.1.3 단체학생들의 경우, 한 감독자당 담당하게 될 학생의 수가 적합한 지에 대한 확인
  - 19.1.4 유학생들의 안전상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관찰 및 관리

## 20 거주지의 보호자

- 20.1 등록기관들은 거주지 보호자에 대한 아래 내용을 항시 알고 있음을 반드시 보증해야만 한다.
  - 20.1.1 이름
  - 20.1.2 현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20.1.3 현 직업
  - 20.1.4 학생(들)과의 관계
- 20.2 모든 거주지 보호자들이 자신들과 등록기관과 숙박시설 알선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들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해당 등록기관에서는 반드시 확실히 해야 한다.

## 21 18세 미만인 학생들의 숙박시설에 대한 경찰 심사

- 21.1 18세 미만인 학생들이 머무는 승인 받은 숙박시설들인 경우
  - 21.1.1 등록기관에서는 반드시 하숙집 가정에 있는 18세 이상인 모든 거주자들(하숙중인 다른 유학생들은 제외)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경찰의 심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 21.1.2 등록기관들은 반드시 현 기숙사 시설 및 예비 기숙사 시설의 직원들과 본 시설에 정기적으로 일을 하러 오는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절차를 걸쳐 뉴질랜드 경찰의 심사를 반드시 이행해야만 한다.
- 21.1.3 등록기관들은 만약 지명된 보호자 및 감독자 또는 임시 숙박시설 직원들도 뉴질랜드 경찰의 심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거나 등록기관의 정책과 일치하면 경찰 심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 7 불만(사항) 처리 절차

### 22 학생들의 불만 처리절차 시스템

- 22.1 등록기관들은 학생들의 불만사항들을 처리할 때, 적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 처리 절차를 즉각적으로 밟을 방법이 있다는 점을 유학생들에게 알리고 또한 그와 관련된 조언도 해준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주어야만 한다.
- 22.2 등록기관은 본 규정 위반에 관련된 학생들의 항의를 처리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이를 문서화 한다.
- 22.3 등록기관들은 국제교육 항소청의 항의처리절차 관련 정보(유학생 대상)을 반드시 교육기관의 알림판과 같이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부착해야만 한다.

### 23 국제교육 항소청

- 23.1 국제교육 항소청은 유학생이나 유학생 대행업체(대리인)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추정하에 항의된 사항을 접수하고 그것을 판결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 23.2 교육부 차관은 국제교육 항소청의 임용기준을 제정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각 기관들의 견해를 수렴한 후, 그 일원들을 임명 한다.
- 23.3 교육부차관은 국무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국제교육 항소청의 일원으로 임명되는 조건들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 23.4 국제교육 항소청의 활동내역들은 다음 두 가지와 같은 문서양식으로 행정기관에 보고되어야 한다.  
23.4.1 3개월 주기로 요약보고  
23.4.2 1년에 한번씩 사건 기록들과 함께 자료 요약 및 분석
- 23.5 학생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등록기관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여기는 유학생이 해당등록기관의 '학생 불만 처리절차 시스템'으로 문제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 국제교육 항소청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 23.6 행정기관은 국제교육 항소청과 협의하여 본 항소청에서 관련 입법에 따라 공명정대한 원칙하에 유학생들의 항의를 접수 및 판결할 것을 명시 하도록 한다.
- 23.7 등록기관들은 국제교육 항소청의 절차를 준수하고, 본 항소청의 요구사항(사실이나 상황을 설명해줄 법정 진술서 제공 포함)에 대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 23.8 국제교육 항소청은 교육전달의 질적 수준 및 교육전달 보장에 관련된 항의와 같이 규정 범위 밖의 사항이 있으면, 이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 받은 특정 관계기관에 일임해야 할 것이다.
- 23.9 국제교육 항소청은 유학생들로부터 접수한 항의사항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행정기관이나 다른 관계부처에게 회부한다.
- 23.10 국제교육 항소청은 유학생관리에 있어 잘못되거나, 오해하게 만들거나, 속이는 행위들에 대한 항의들을 통상위원회(the Commerce Commission)나 규제당국들에게 일임한다.
- 23.11 국제교육 항소청에 제공된 모든 개인신상 정보들은 1993년 사생활 보호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 24 국제교육 항소청의 결정

- 24.1 국제교육 항소청은 항의에 영향을 받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본 기관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알려준다.
- 24.2 국제교육 항소청은 규정위반의 정도가 심각한지 않다면, 이에 대한 해지 및 관리정지처분과는 별개로, 교정작업 기획, (규정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등록기관명 기재, 배상명령 그리고 비용 및 이자 지불과 같은 적합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4.3 만약 국제교육 항소청에서 등록기관에게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할 시에는 이에 충분한 일정기간이 주어질 것이다.
- 24.4 만약 등록기관이 국제교육 항소청의 요구 및 제재에 부응하지 않을 시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응하지 않을 시를 포함), 등록기관을 규정으로부터 자격정지 또는 해지시킬 것을 재검토위원회에 권해도 된다.
- 24.5 만약 국제교육 항소청에서 등록기관이 심각한 규정 위반을 범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면, 해당 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등록기관으로서의 자격정지 또는 해지시킬 것을 재검토위원회에 권할 수 있다.

## 25 국제교육담당 재검토위원회

- 25.1 재검토위원회는 국제교육 항소청의 권고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이 설립한 기관이다. 참고로 국제교육 항소청은 등록기관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행했는지 또는 본 기관이 가한 제재에 만족스럽게 응하는 지를 검토하는 곳이다.
- 25.2 재검토위원회는 3명의 독립적인 개별 위원들로 구성될 것이며, 그 중 1명이 부재 시, 의결정족수인 2명의 위원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 25.3 교육부 차관은 국무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재검토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 25.4 재검토위원회의 활동내역들은 행정기관에 문서양식으로 작성하여 매년 보고해야 할 것이다.
- 25.5 재검토위원회는 항의사항을 접수 및 판결하는데 있어 관련 입법에 따라 공명정대한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해결되도록 자체 내의 절차들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등록기관들은 재검토위원회의 절차를 따르고 본 기관의 요구 시, 항의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 25.6 재검토위원회에 제공된 모든 개인신상 정보들은 1993년 사생활 보호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 26 재검토위원회의 결정

- 26.1 재검토위원회는
  - 26.1.1 해당 교육기관을 본 규정의 등록된 기관에서 해지할 것이다.
  - 26.1.2 해당 교육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등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할 것이다.
  - 26.1.3 국제교육 항소청의 권고사항을 지지할 것이다.
  - 26.1.4 국제교육 항소청의 권고사항을 무시할 것이다.
  - 26.1.5 해당 문제의 전말 혹은 특정부분을 재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국제교육 항소청에 다시 회부할 것이다.
- 26.2 재검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미미한 제재 중 일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실행할 수도 있다.
  - 26.2.1 위반사안 시정 여건 마련
  - 26.2.2 등록기관이 위반한 규정 내용 발행
  - 26.2.3 배상 명령
- 26.3 재검토위원회는 상기 25.5항, 26.1항 그리고 26.2항에 포함된 범위 밖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26.3.1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임시결정
  - 26.3.2 차후 통보될 일정기간 동안 시행될 결정
  - 26.3.3 일정기간 동안 시행될 결정
- 26.4 재검토위원회는 행정기관 및 항의에 영향을 받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본 기관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알려준다.

## 8 신청 및 관찰

### 27 신청

- 27.1 교육기관들이 본 규정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규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행정기관에 의해서만 그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 27.2 교육기관이 본 규정의 등록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구할 수 있는) 규정된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보내야만 한다. 행정기관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승인 또는 거절할지를 심사하여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다.
- 27.3 다음에 해당되는 유학생들을 입학시키고 싶은 등록기관들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작성한 신청서 외에 추가 신청서를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해야만 한다.
- (가) 학교 호스텔에 숙박할 어린 유학생들
  - (나) 어린 단체 유학생들
  - (다) 학교에 경우 7~8학년, 그 외 교육기관인 경우 11살~13살에 입학하며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유학생들
- 27.4 상기 27.3항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등록기관이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공정한 현장검증을 포함한 다음 사항들이 모두 적절히 충족되고 있음을 반드시 해당기관에게 만족시켜야만 한다.
- (가) (타당하다면) 3.4항의 단체 학생들 대상 요구조건
  - (나) 15.5항, 15.6항 그리고 15.7항에 명시된 숙박시설 관련 요구조건
- 27.5 등록기관들은 다음 중 하나라도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반드시 행정기관에 14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한다.
- 27.5.1 소유권
  - 27.5.2 등록기관의 법적 상태
  - 27.5.3 시설 명
  - 27.5.4 학생들의 학비보호 방침 상태
  - 27.5.5 시설 주소
  - 27.5.6 사설교육 훈련 시설 책임자
  - 27.5.7 입학시키는 유학생들의 연령대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 조항들
  - 27.5.8 시설 위치 변경 및 추가시설 위치
- 27.6 상기 27.5항에 열거된 항목들 중 하나라도 변경이 될 경우, 등록기관은 반드시 기존 규정 신청요건에 충족이 됨을 보증하거나,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만 한다.
- 27.7 행정기관은 신청서에 등록된 해당 교육기관을 제명시키거나 교육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7.8 행정기관은 현재 국제교육 항소청이나 재검토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교육기관을 해당 조사기관들의 서면 승인 없이도 등록기관으로서 제명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 28 관찰 및 재검토

- 28.1 행정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등록기관들이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로 개인 또는 독립기관을 임명, 지정하는 것을 포함해 지속적인 관찰을 위한 절차들을 제정하고 실행할 것이다.
- 28.2 행정기관이 등록기관에 현장검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 실시 최소 (근무일) 5일전에는 통보를 해준다.
- 28.3 등록기관들은 적어도 일년에 한번은 반드시 규정에 따른 자신들의 업무수행 정도와 예비 및 현 입학 유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들의 정확성과 적합성들에 대한 재점검을 기관자체 내에서 실행해야만 한다.
- 28.4 만약 행정기관이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등록기관이 본 규정의 조항을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것 같다고 여긴다면, 본 규정의 조항에 의거하여 해당 문제를 항의사항으로 조사 및 평가할 것을 국제교육 항소청에 회부해야 할 것이다.
- 28.5 행정기관은 교육전달의 질적 수준 및 교육전달 보장에 관련된 항의와 같이 규정 범위 밖의 사항이라면 이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 받은 관계기관에 일임해야 할 것이다.



## 9 시행 및 관리

### 29 전환 계획

- 29.1 등록기관들은 2011년 7월 1일부터 상기 15.5항, 27.3항 그리고 27.4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어린 유학생들은 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입학 시켜서도, 입학을 연장시켜서도 절대로 안 된다.
- 29.2 등록기관들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10살 이하의 유학생들을 숙박시설로 허가된 호스텔에 숙박시키거나 기존 숙박을 연장시킬 수 있다. 단 상기 15.5항, 27.3항, 그리고 27.4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해당 학생이 학교 1~6학년에 입학하고 학교 호스텔에서 지내며 등록기관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을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 29.3 국제교육 항소청이나 재검토위원회의 주목을 받게 된 항의사항들은 본 규정(2010년 개정)의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2003년 개정된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될 것이다.

### 30 규정의 수정안

- 30.1 행정기관은 본 규정의 조항들 중 일부를 수정할 의도 또는 계획이 있다면, 등록기관들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고 제안된 수정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최소 (근무일)20일의 시간을 주어야만 한다.
- 30.2 행정기관은 수정안에 대한 견해들을 받은 후, 반드시 장관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을 서면으로 승인 받아야만 한다.
- 30.3 본 규정의 수정안은 뉴질랜드 공보로 공고될 것이다.

### 31 규정의 시행 및 관리 업무 이관

- 31.1 본 규정의 시행 및 관리 업무는 해당 기관과의 합의에 의해 현 행정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 될 수 있다.
- 31.2 교육업계의 대표 측에서는 본 규정의 시행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이관문제를 장관에게 건의 할 수 있다.
- 31.3 현 행정기관은 본 규정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이관하려는 의도나 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규정의 수정안들을 등록기관들에게 반드시 통보를 해줘야만 한다. 본 계획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최소 (근무일)20일의 시간을 반드시 제공해야만 한다.
- 31.4 장관은 본 규정의 시행 및 관리 업무 이관 및 그에 따른 수정안들에 관하여 현 행정기관과 차기 행정기관의 조언과 본 규정에 등록된 기관들이 제시한 견해들을 수렴 및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릴 것이다.
- 31.5 본 규정의 시행 및 관리 업무 이관은 뉴질랜드 공보로 공고될 것이다.



2013년 8월 뉴질랜드 NZQA 발행.

발행물 관련 문의  
NZQA  
PO Box 160  
Wellington 6140, New Zealand

[www.nzqa.govt.nz](http://www.nzqa.govt.nz)

본 책자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NZQA의 허가나 동의 없이 연구 및 조사, 재검토, 비평, 평론등의 개인적인 사용목적, 교육목적을 위한 무단 복제 또는 불법 복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